

【 1 】 제34회의회(臨時會)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5. 3. 27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34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회 기 : 1995. 4. 3(1일간)

【 2 】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5. 3. 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명의 발굴 및 변천과정등 조사, 보존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기능 지정 (안 제4조)

나. 지명조사의 범위 지정 (안 제7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